

의안번호	2125446
의 퇴 인	박주민 의원
회 답 일	2024. 1. 8.
추 계 번호	23A475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적정임금을 산정·고시하도록 하고 관련 조사·연구를 위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 동안 총 14.2억원(연평균 2.8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적정임금 산정·고시	226	226	226	226	226	1,130	226
적정임금 관련 조사·연구	57	57	57	57	57	285	57
합계	283	283	283	283	283	1,415	28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조의5 (도급계약에 관한 적정임금 지급의 원칙)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도급 계약에서 하도급거래를 하는 경우 적정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의무 규정
	안 제5조의6 (적정임금의 지급을 위한 책무)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적정임금 적용대상 근로자에게 적정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재량 규정
2	안 제5조의7 (적정임금의 산정 등)	○ 기획재정부 장관은 매년 직종별·기능별 적정임금을 고시하여야 한다.	의무 규정
		○ 이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적정임금 산정을 위한 조사·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재량 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5조의5(도급계약에 관한 적정임금 지급의 원칙) 안 제5조의6(적정임금의 지급을 위한 책무)	×	구체적 사항이 대통령령 등으로 위임되어 있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
2	안 제5조의7(적정임금의 산정 등)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의 적정임금 산정·고시 및 조사·연구 위탁시 추가재정소요는 유사사례인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위원회’ 운영 및 건설업 적정임금 관련 정책연구용역 추진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함

- 기획재정부 장관의 적정임금 산정·고시에 따른 비용은 적정임금과 유사한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회 운영경비와 적정임금 조사·연구위탁과 성격이 유사한 건설업 적정연구 관련 정책연구용역 사업비의 평균 수준이 될 것으로 가정

-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법」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고용노동부의 소속기관임¹⁾
- (건설업 적정임금) 2021년 일자리위원회부처합동으로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이 발표²⁾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사전준비를 위한 건설업 적정임금 관련 정책연구용역이 추진된 바 있음

1) 제12조(최저임금위원회의 설치)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위원회를 둔다.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및 재심의, 2. 최저임금 적용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심의, 3. 최저임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 4.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

2) 동 제도는 2023년부터 국가·지자체의 300억원 이상의 공사에 시범적으로 우선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현재 관련 법령 미개정으로 인해 제도 도입은 유보된 상태

- 개정안 부칙에 따라 추가 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발생할 것으로 전제
- 개정안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도급계약 중 하도급 거래에 대해 적정임금 이상을 지급할 경우 노무비 증가로 인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다만, 구체적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위임되는 등 현 시점에서 기술적으로 추계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동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를 실시하지 아니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적정임금 산정·고시 및 조사·연구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은 유사사례인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원회 기본경비와 건설업 적정임금 산정 관련 정책연구용역비의 평균 수준이 될 것으로 가정
 - (최저임금위원회) 최근 5년(2020~2024년)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에 소요되는 기본경비³⁾는 평균 2.3억원([표 1] 참조)으로 조사됨

[표 1] 최저임금위원회 위원회 심의 등 운영비 추이: 2020~2024년(안)

(단위: 백만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안)	평균
최저임금위원회기본경비	219	210	242	194	263	226

주: 2020~2023년은 집행액, 2024년은 예산액 기준임

자료: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기본경비(7018-263, 비총액)’의 최근 5년 예·결산 내역을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3) 최저임금위원회 관련 사업은 기관운영비인 최저임금위원회기본경비(7018-221, 총액)와 위원회 심의 관련 기본경비(7018-263, 비총액), 그 외 최저임금위원회 전문성강화(3036-301) 및 전산경비(7018-265, 비총액)으로 구성됨. 동 추계는 최저임금 심의 운영지원(회의수당·여비·자료발간비 등) 예산인 최저임금위원회기본경비(7018-263, 비총액) 사업의 예산을 준용함

[참고] 최저임금위원회 관련 사업현황(2024년 예산안 기준)

(단위: 백만원)

위원회기본경비 (7018-221, 총액)	위원회기본경비 (7018-263, 비총액)	위원회 전문성강화 (3036-301)	위원회전산경비 (7018-265, 비총액)
86	263	576	199

자료: 고용노동부, 2024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건설업 적정임금 관련 조사연구) 건설업 적정임금 관련 연구용역 실적은 다음 [표 2]와 같이 평균 57백만원 수준으로 조사됨

[표 2] 건설업 적정임금 산정 관련 정책연구용역 현황

(단위: 백만원)

연구 제목	발주처	수행기관	수행연도	금액
건설근로자 임금 실태조사 및 적정임금 산출방안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공제회	2021	70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성과 평가 및 제도화 방안 연구	알자리위원회	국토연구원	2019	45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추진방안 및 성과평가 연구	알자리위원회	국토연구원	2018	44
시중노동단가 산정체계 개편방안 연구	국토교통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18	55
건설근로자에 대한 적정임금 확보 및 지급 방안	고용노동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1	73
평균				57

자료: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go.kr)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개정안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적정임금을 산정·고시하도록 하고 관련 조사·연구를 위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 동안 총 14.2억원(연평균 2.8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계됨

[표 3]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적정임금 산정·고시	226	226	226	226	226	1,130	226
적정임금 관련 조사·연구	57	57	57	57	57	285	57
합계	283	283	283	283	283	1,415	28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총괄과
과장	권아영
추계세제분석관	태정립
연락처	02-6788-4652
	jitae@nabo.go.kr